

---

**2023학년도 전남대학교 교직원  
「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」**

---

**2023. 10.**

## 목 차

I. 기본방향	3
II. 지급대상 및 제한	3
III. 지급방법 및 절차	5
IV. 심사위원회 구성	8
V. 소요예산 및 1인당 한도액	10
VI. 업무분담 체계	11
VII. 평가 및 지급기준	11
별첨1(연구)	12
별첨2(학생지도)	43

## 전남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

### I

### 기본 방향

- 관련 법령 및 규정,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계획 수립
  - 「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(교육·연구비 등의 지급)
  - 「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2조 (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)
  - 「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(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 라인)
  - 「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4조(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 비용의 지급)
- 우리 대학의 특성화 방향(연구중심대학)을 고려하여 연구,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지급 기준 마련
-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및 난이도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
- 계획서 및 실적물을 미제출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제출 등 사안에 대한 환수 방안 마련

### II

### 지급대상 및 제한

#### □ 지급대상

-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실적인정 기간의 근무일이 3개월 이상으로(대학회계 연도 기준)
  - 신분변동자의 비용 지급: 실제 근무기간 중 실적을 반영하여 월활 지급 하되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로 인정
- 계획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교직원

## □ 지급제한 및 환수

- 지급 제외
  - 계획서 및 실적 미제출자
  - 부설학교 소속 직원
- 지급 제한
  - 과장급(사무관) 이상 직원의 학생지도비
  - 파견자, 공로연수자 등의 해당기간 학생지도비
  - 휴직, 징계(정직) 및 직위해제 기간
  - 학년도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는 실제 활동기간(근무기간)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(총괄, 영역별)에서 심의 후 월할 지급
  - 초과(100% 이상) 실적의 경우 실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지급
- 자체 점검 및 환수 조치
  - 매년 1회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지급 실적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
  - 실적 미제출의 경우 지급된 비용을 전액 환수하고, 허위·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부당 수령액의 3배(부당 수령액+2배 가산징수)를 환수. 다만,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환수 제외
  - 부당 수령 적발 시 환수금액 만큼 차년도 참여를 제한하고,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참여 제한
  - 지급받은 금액(선급금 등)이 실적 인정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차액 환수
  - 비용 환수를 통보 받은 교직원은 지정된 기한까지 대학 지정계좌로 반납 해야 하며, 미반납 시 차년도 지급비용에서 차감
  - 퇴직 또는 전출 예정 교직원이 미반납 시 퇴직 또는 전출과 관련된 행정 사항 유보 및 추후 환수
  -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에 의해 면직된 교직원의 경우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실적에 따라 차액 환수. 다만, 기본연구활동지원비를 수령한 교원은 계획서에 명시된 결과물 제출 기한까지 환수 유예
- 이의신청
  - 심사결과와 자체점검 및 환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

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영역별 심사위원회 및 총괄심사위원회에 제출
- 영역별심사위원회 및 총괄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,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
- 다만,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### III

## 지급방법 및 절차

### □ 실적 인정기간: 2023. 03. 01. ~ 2024. 02. 28.

(※ 세부사항은 영역별 지급기준에 명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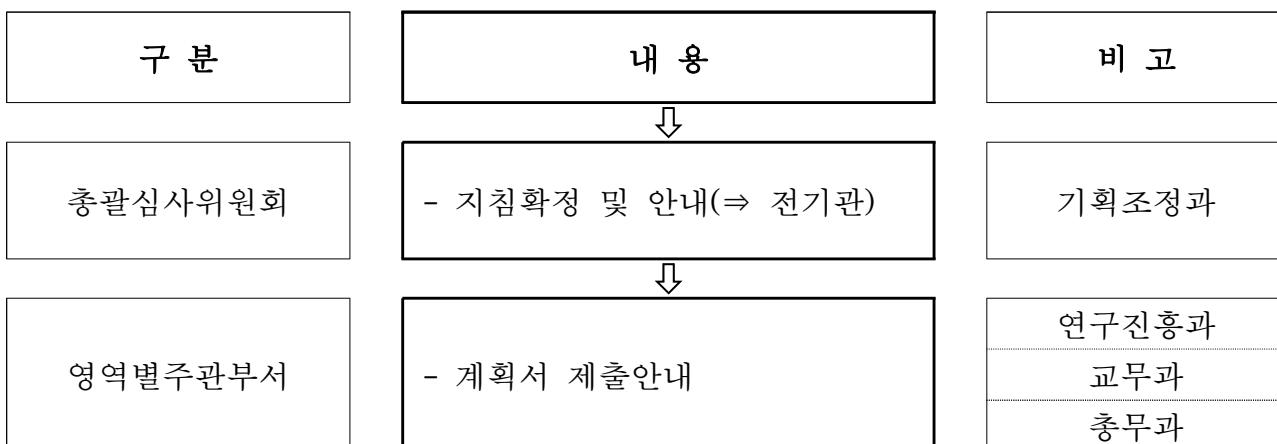
### □ 지급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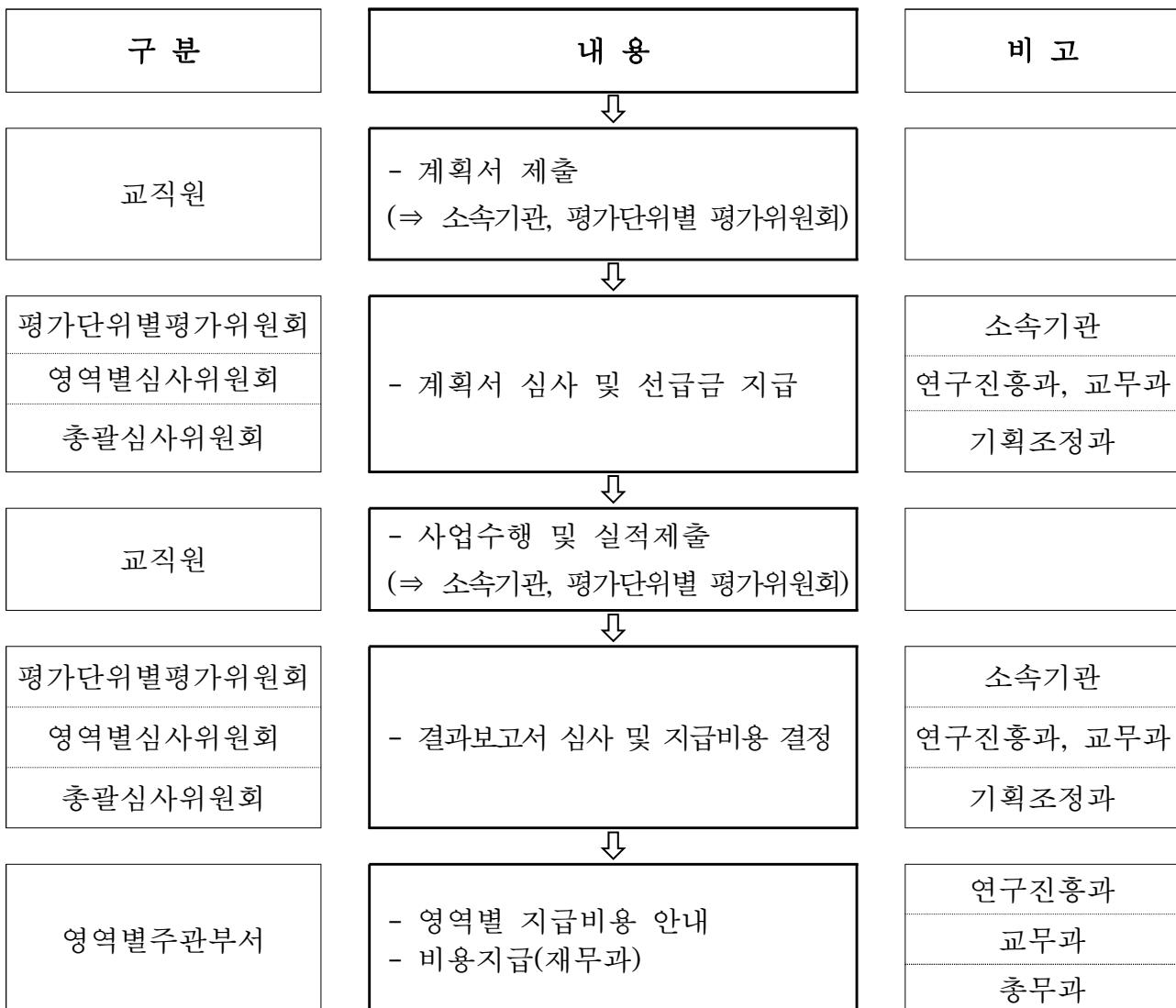
- 1차(선급금): 7월
- 2차(기성금): 익년도 2월

### □ 지급 방법

- 연구,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
- 영역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심사 후 40%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
- 학생지도 실적은 대면, 비대면 활동 모두 실적으로 인정
- 비용지급을 위한 심사를 위해 총괄심사위원회, 영역별 심사위원회,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

### □ 지급 절차





### ○ 계획서·사업수행 및 실적 제출

- 영역별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개인별 계획서 및 활동실적 제출
- 본부소속 교직원은 총무과(광주), 행정지원과(여수)로 제출
- 대학(원), 부속기관 소속 교직원은 소속기관으로 제출  
(단, 평가위원회가 없는 부속기관은 본부 주관부서로 제출)

### ○ 계획서 심사 및 선급금 지급

- 계획서 제출기한의 준수, 계획의 실현가능성, 충실성, 발전성, 달성을 가능성 등 적합 여부를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, 영역별 심사위원회, 총괄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40%범위 내에서 선급금 지급
- 조교의 경우 1학기 임기만료 대상 조교에 대해서는 1학기분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되, 9. 1.자 재임용 조교는 변경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2학기 선급금은 미지급

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
  - 계획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주관부서(연구-연구진흥과, 학생지도-교무과, 총무과)로 제출
- 영역별 심사위원회
  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
- 총괄심사위원회
  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, 영역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계획서 승인
- 실적심사 및 지급비용 결정
  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
    - 영역별 달성도 등의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, 증빙서류를 통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영역별 주관부서(연구-연구진흥과, 학생지도-교무과, 총무과)로 제출
    - ※ 계획서상의 활동만 실적으로 인정하며, 계획서상의 활동이 아닌 경우 실적 인정 불가
  - 영역별 심사위원회
    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근무기간, 가·감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
  - 총괄심사위원회
    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, 영역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지급비용 결정
- 지급비용 안내 및 지급
  - 영역별 주관부서(연구-연구진흥과, 학생지도-교무과, 총무과)에서 지급 비용 안내·지급
  - 교내연구지원사업(대학연구지원사업, 우수논문 장려금, 국제학술회의 논문 발표 경비) 비용 지급을 위한 심사는 별도의 운영(지원) 계획에 따라 진행한 후 대학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후 차등 지급

## IV

## 심사위원회 구성

□ 총괄심사위원회, 영역별 심사위원회,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로 구성·운영

### □ 총괄심사위원회

- 구성
  -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사무국장, 직원 1명, 조교 1명, 학생 3명,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기능
  -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(안) 심의
  - 영역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의
  - 평가 및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심의
  -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

### □ 영역별 심사위원회

- 연구활동 심사위원회
  - 구성
    - . 연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산학협력부처장, 산학연구부처장, 연구진흥과장, 연구행정과장 등을 포함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  - 주관부서: 연구처 연구진흥과
- 학생지도 및 정책연구 활동 심사위원회
  - 구성
    - . 교무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학생부처장, 기획조정부처장, 교학기획부처장, 조교 등을 포함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  - 주관부서: 교무처 교무과

○ 기능

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심사(근무기간 및 가감점 사항 등 반영)
-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심사
-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

□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

○ 대학(원) 평가위원회

- 구성
  - 학(원)장을 위원장으로 부학(원)장, 대학 행정실장을 포함한 5~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학(원)장이 임명하여 구성
- 평가 대상: 소속 교원, 직원, 조교

○ 부속기관 평가위원회

- 구성
    -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~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여 구성
  - 평가 대상: 소속 교원, 직원, 조교
- ※ 소속 교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본부(광주/여수) 평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

○ 본부(광주) 평가위원회

- 구성
  -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학생부처장, 기획조정부처장, 기획조정과장, 학생과장, 입학과장, 대학 행정실장 등을 포함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평가 대상: 광주캠퍼스 본부 교직원 및 소속 기관에 평가단위 평가위원회가 없는 교직원
- 주관부서: 사무국 총무과

○ 본부(여수) 평가위원회

- 구성
  - 행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교학기획부처장, 학생지원부처장, 산학연구부처장, 학무본부장, 교학기획과장, 행정지원과장, 대학 행정실장 등을 포함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- 평가 대상: 여수캠퍼스 본부 교직원 및 소속 기관에 평가단위 평가위원회가 없는 교직원
- 주관부서: 행정본부 행정지원과
  - 기능
    -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의 계획서, 결과보고서 평가
    -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
    - 기타 필요한 사항

## □ 각 위원회 소집 및 의결

-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

V

## 소요예산 및 1인당 한도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연 구				학생지도	합 계
	기본연구	정책연구	교내연구	소 계		
1인당 기준액	17,050	7,000	사업별 기준	-	7,000(직원) 5,500(조교)	-
총예산	20,388,642	학생지도 총액에 포함	3,833,602	24,222,244	5,030,020	29,252,264

※ 직종별 한도액: 교원 17,050천원, 직원 7,000천원, 조교 5,500천원

- 다만, 교원의 교내연구지원사업은 별도기준에 따름

※ 정책연구사업은 기본연구활동사업과 중복참여 불가

※ 최종 확정 예산액에 따라 지급 한도액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## VI

## 업무분담 체계

구분	담당 업무	부서
총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괄심사위원회 운영</li> <li>- 비용 지급 지침 수립</li> <li>- 교육부 협의 및 사업부서 간 협의사항 조정</li> <li>- 비용 지급 일정 수립·안내</li> </ul>	기획조정과
주관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역별 세부 지침(지급기준, 심사기준) 수립</li> <li>- 영역별 심사위원회 운영</li> <li>- 영역별 진행일정 수립·안내</li> <li>- 영역별 예산확보</li> <li>- 개인별 비용 지급 안내 및 내역관리</li> <li>- 부정수급자 및 비용 환수 대상자 관리 등</li> </ul>	연구진흥과 교무과 총무과
관리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 운영</li> <li>-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수합, 활동실적 결과물·증빙서류 확인 및 평가결과 산출, 증빙자료 보관 등</li> </ul> </li> </ul>	평가단위별 소속기관
지원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부서 자료 요청 시 협조</li> </ul>	학사과 학생과 재무과 취업지원실

## VII

## 평가 및 지급 기준

별첨1(연구)

별첨2(학생지도)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1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지침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1]

## 가. 기본연구활동지원비

### 1. 기본 방향

- 기본연구활동계획의 수행에 따른 달성성과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한다.
-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구년 지원사업,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사업, 신진 및 중견연구 지원사업,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원사업 등은 심사위원회 평가와 학술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자에 한해 지급한다.
- 동일한 달성업적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### 2. 평가 지표

- 기본연구활동지원사업: 국내외 학술논문, 저서, 역서, 특허, 예·체능 활동실적 등
- 교내연구지원사업: 『사업공고 → 계획서 접수 및 평가 → 학술연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심의』를 거쳐 확정한 최종점수

### 3. 연구영역 지원사업

항 목	내 용		비고
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	지급대상	기본연구활동계획서, 반납동의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	
	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간 4회 분할 지급(연간 1,705만원, 총 3,410만원 내외)</li> <li>- 연간 2회 지급: 7월(40%), 익년 2월(60%)</li> </ul> <p><b>※ 2학기 신임교원은 10월(40%), 익년 2월(60%)</b></p>	
	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년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본연구활동계획서 제출: 40%</li> <li>·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제출: 60%</li> </ul> </li> <li>- 2차년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차년도계획서 제출: 40%</li> <li>· 최종보고서 및 성과업적 제출: 60%</li> </ul> </li> </ul> <p>- 최종 성과업적 제출: 2차년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과업적: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, SCI(E)급 및 SCOPUS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, 기타 국내외 학술지, 저서 및 역서, 특허, 예·체능 활동실적 등</li> </ul> <p><b>※ 연구기간 동안 달성한 성과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성과 미달성 시 기 지급된 비용 전액 환수함</b></p> <p><b>※ 우수논문장려금을 지급받은 업적은 인정하지 않음</b></p> <p><b>※ 교내 학술연구비 관련 제출업적은 인정하지 않음</b></p>	
예산액	20,388,642천원		

항 목	내 용		비고
연구년 지원사업	지급대상	연구년 지원사업 선정자	연구비 중앙 관리
	지급시기	3월, 9월	
	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당 지원금액: 4,000천원~10,000천원</li> <li>-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: 2년 이내 논문 별쇄본</li> </ul> <p>※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함</p>	
우수논문 장려금 지원사업	지급대상	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	
	지급시기	매월 지급	
	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논문의 확인을 통해 차등지급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수학술논문: 7,000천원~10,000천원</li> <li>• SCI, SSCI, A&amp;HCI저널 JCR %: 1,000천원~5,000천원</li> <li>•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지): 600천원~800천원</li> <li>• 공저자: 200천원~600천원</li> </ul> </li> </ul>	
신진 및 중견 연구지원사업	지급대상	신진 및 중견연구지원사업 선정자	연구비 중앙 관리
	지급시기	3월(연구비 카드 지급)	
	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당 지원금액: 6,000천원~40,000천원</li> <li>-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: 2년 이내 논문 별쇄본 제출</li> </ul> <p>※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함</p>	
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지원사업	지급대상	논문발표 지원사업 선정자	
	지급시기	수시	
	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: 500천원</li> <li>•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: 800천원</li> <li>•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: 1,200천원</li> <li>• 유럽, 캐나다, 미국, 남미, 호주 및 그 외 지역: 1,500천원</li> </ul> </li> </ul>	
정책연구과제 지원사업 (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과 중복참여 불가)	지급대상	정책연구과제 공모 선정자	
	지급시기	7월, 익년 2월	
	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보고서 평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S등급: 상위30%(105% 지급)</li> <li>• A등급: 30%초과 70% 이내(100% 지급)</li> <li>• B등급: 70%초과 100% 이내(95% 지급)</li> </ul> </li> </ul>	

## 4. 사업별 세부 지급지침

### 4.1. 기본연구활동지원비

#### 가. 지원 기준

-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연구활동기간 중 수행하고자 하는 ‘**기본연구활동**’ 을 설정하고 기본연구활동계획서,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, 최종보고서 및 연구활동 성과물을 제출한 자에 한해 1인당 연간 1,705만원 내외의 기준비용을 2년간 지급한다.(단, 6개월 이상 휴직교원은 휴직 기간만큼 실적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)
- 전년도 연구성과 미제출로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은 당해연도 비용 지급 및 모든 교내 연구비 지급을 제한하며, 반납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.
- 기본연구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작은 당해년도 3월로 한다. 다만, 9월에 임용된 자는 기본연구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 시작은 9월로 한다.
- 재직기간이 퇴직전 2년 이하인 자는 잔여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기본연구활동기간과 지급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.
- 퇴직 또는 전출 예정 교직원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기 지급금액 미 반납 시 퇴직 또는 전출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한다.

#### 나. 지급 시기 및 방법

- 1차년도
  - 1차지급: 기본연구활동계획서와 반납동의서를 제출한 자 중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자에 한해 당해연도 7월(9월 임용자는 10월)에 기준 비용의 40%를 지급한다.
  - 2차지급: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를 제출한 자에 한해 기준비용의 60%를 다음연도 2월에 지급한다.
- 2차년도
  - 1차지급: 2차년도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당해연도 7월에 기준비용의 40%를 지급한다.
  - 2차지급: 기본연구활동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2월에 기준비용의 60%에 대해 달성성과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한다.
- 지급예외 및 환수
  - 연구활동기간 동안 달성성과가 없는 경우 지급받은 비용 전체를 환수한다.
  - 지급 대상자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.
  - 징계와 직위해제 등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는 근무기간만큼 월할 산정하여 지급하되,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로 인정한다.

· 회수 기간 및 방법

항목	내용	
회수 기간	기 지급받은 기본연구활동지원비용을 전액 반납할 때까지	
회수 방법	재직 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여공제(원천징수) 원칙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월 100만원*씩 급여에서 공제</li> <li>• 본인이 원하는 경우, 급여공제(원천 징수) 처리 전에 현금 일시납으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할 수 있고, 급여공제(원천징수) 도중 잔액에 대하여 완납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
	퇴직 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직교원은 현금일시납으로 퇴직 전까지 기 지급 비용 전액 반납</li> </ul>

\* 단, 기타 부득이한 사정[공제금액 과다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‘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(월 150만원)’ 보다 적은 경우]으로 월 100만원을 공제하지 못할 경우 공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 조정에 따른 회수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

**다. 기본연구활동계획서, 반납동의서,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,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**

- 기본연구활동계획서(서식 1)
  - 기본연구활동기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활동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한다.
  - 기본연구활동기간은 시작년도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. 단, 신규임용자와 복직자는 임용 및 복직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.
- 기본연구활동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(서식 2)
  - 기본연구활동기간(1년) 동안 수행한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  - 연차별로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1월말까지 제출한다.
- 기본연구활동 최종보고서(서식 3)
  - 기본연구활동계획서를 기준으로 수행된 연구활동 내용 및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  -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1월말까지 제출한다.
- 반납동의서(서식 11)
  - 연구 결과물 미제출 시 급여 공제를 통한 반납을 동의하는 반납동의서를 기본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.

**라. 기본연구활동계획 변경**

- 제출시기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연구활동계획변경서(서식 4)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**마. 기본연구활동계획서의 평가**

- 기본연구활동계획서의 평가는 평가단위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수행한다.
- 평가기준: 제출한 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Pass 또는 Fail로 평가하고 심사기준 항목 중 Pass가 3개 이상이면 적합으로 평가한다.

- 심사기준

- ① 계획서 제출 기한의 준수: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평가단위에서 심의하여 기한의 준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② 계획의 실현 가능성: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현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
- ③ 연구계획의 충실성: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
- ④ 기대성과 제시: 계획에 제시한 기대성과 제시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

**바.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 평가**

- 평가는 평가단위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수행한다.
  - 평가기준: 제출한 보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‘적합’ 또는 ‘부적합’으로 평가한다.
  - 심사기준: 기본계획서 대비 1년차의 수행실적 및 2차년도 계획의 충실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

**사. 기본연구활동 최종보고서 평가**

- 평가는 평가단위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수행한다.
  - 평가기준: 계획서 대비 일치 여부와 기준 업적 충족 여부를 ‘적합’ 또는 ‘부적합’으로 평가한다.
  - 심사기준
    - ① 계획서대비 일치 여부: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이 당초 계획서 대비(또는 변경계획서)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.
    - ② 기준업적 충족 여부: 연구성과물이 기준업적에 충족한지 여부를 가지급, 나지급, 다지급 3단계로 평가한다.
    - ③ CAPD 학생상담 평가는 연간 이행 여부(상담횟수)를 평가한다.

**아. 기본연구활동 변경계획서 평가**

- 평가는 평가단위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수행한다.
  - 평가기준: 제출한 변경계획서의 충실성과 기대성과 제시여부를 ‘적합’ 또는 ‘부적합’으로 평가한다.
  - 심사기준
    - ① 계획의 충실성: 연구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
    - ② 기대성과 제시: 계획에 제시한 기대성과 제시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

## 자. 차등지급 기준

- 기본연구활동 최종보고서(서식 3)를 제출한 대상자 중 다음의 성과업적을 달성한 자에 한하여 2차년도의 2차 지급비용으로 차등지급한다. 법학전문대학원 재직교원 중 법무실무형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법무실무 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지급 구분	기준업적	지급비율
가. 지급	<p>다음 성과 중 <b>하나</b>를 달성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논문 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<b>주저자</b> 논문</li> <li>- 국제논문 : SCI(E), SSCI, A&amp;HCI, SCOPUS 등재 학술지 <b>주저자</b> 논문</li> <li>- 학술서적: 국내외 학술 저·역서 및 기타학술저·역서(3인 이하 저서)</li> <li>- 특허등록: 국내외 특허 대표 발명</li> <li>- 예체능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술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, 또는 2, 3, 4, 5, 7 항의 해당실적 3건</li> <li>• 음악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, 또는 2, 3, 4, 5, 6, 7항의 해당실적 3건</li> </ul> </li> <li>- 법조실무실적: 교육용사건기록 2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년차 2차 지급 기준액 100% 지급</li> </ul>
나. 지급	<p>다음 성과 중 <b>하나</b>를 달성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국내외 학술지 <b>주저자</b> 논문</li> <li>- 기타 학술서적</li> <li>- 예체능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술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2, 3, 4, 5, 7항의 해당실적 2건</li> <li>• 음악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2, 3, 4, 5, 6, 7항의 해당실적 2건</li> </ul> </li> <li>- 법조실무실적: 교육용사건기록 1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년차 2차 지급 기준액 80% 지급</li> </ul>
다. 지급	가, 나 지급에 해당되는 성과업적 미달성자	지급금액 전체 환수
감액 기준	<p>다음에 해당될 경우 <b>달성정도에 상관없이 해당금액 감액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간 책임시수 미달성: 학점당 100만원 감액 (단, 4학점이상 미이행 시 400만원으로 감액금액 상한액 적용) (미달성 수업시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)</li> <li>- 수의과대학, 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연간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: 400만원 감액</li> <li>- CAPD상 학생상담실적 연 10회 미달성: 400만원 감액 (상담내용은 50자이상 작성하되, 연구년·파견·휴직 등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은 해당기간만큼 제외)</li> </ul>	2차년도 비용지급시 감액

\*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까지 인정

\*\*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학생상담은 제한적으로 인정

#### 차. 퇴직 전 2년 이내 교원의 비용 지급 기준

- 대상: 실적인정기간 시작연도시점에서 퇴직 잔여기간이 2년이내인 교원에 해당
- 기준업적: ①과 ②중 선택하여 계획 수립
  - ① 차등지급기준 가지급 나지급중 1개이상 달성시 100% 지급
  - ② 학술대회 논문발표(주저자): 100% 지급, 단,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차 지급시 학술 대회 논문발표 실적확인 후 연간 비용 일시불 지급(연간 1편씩 제출)

퇴직 잔여기간	학술대회 논문발표	지급시기
6개월	1편 이상	8월말 퇴직 전
1년	1편 이상	2월말 퇴직 전
1년 6개월	2편 이상	2월말, 8월말 퇴직 전
2년	2편 이상	2월말, 익년도 2월말 퇴직 전

\* 감액기준은 일반교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
\* 퇴직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로서 8월말 정년 퇴직교원은 퇴직 예정일까지 학술대회가 없을 시 교내·외 학술세미나 발표 1회 이상 또는 연구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## 4.2. 교내연구지원사업

### 4.2.1 연구년 지원사업

#### 가. 지원 목적 및 절차

우리 대학 전임교원 중 교육과 연구에 우수한 업적을 달성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력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연구지원사업으로서 『연구과제 공모 → 연구계획서 접수 → 연구계획서 평가 → 연구과제 선정』 등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다.

#### 나. 지원 금액 변경

신설	구분	연구기간		구분	제출요구 연구성과물
		1년	6개월		
I	국외	10,000천원	6,000천원	· 연구기간 6개월: 60일 이상 해외 체류 · 연구기간 1년: 90일 이상 해외 체류	· 학술논문 (주저자)
	국내	7,000천원	4,000천원	-	
II	국내외	-	-	-	· 연구결과 보고서

#### 다. 신청자격

##### 1) 연구년 유형 I(연구비 지원)

-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,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 및 국내 또는 국제 학술저·역서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하여 160점 이상인 자. 다만, 예·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5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을 포함하여 연구실적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(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)

- ② 6개월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2.5년 이상, 1년 신청자는 연구 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자

##### 2) 연구년 유형 II(연구비 미지원)

-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, 최근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 및 국내 또는 국제 학술저·역서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 100점 이상인 자, 다만 예·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0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 이상인 자.(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)
- ② 연구비 없는 연구년의 경우 재직 잔여 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.

## 라. 신청 제한

- ① 연구개시일 현재 교내연구비(학술도서출판지원비 제외)를 지원받고 연구 수행중인 자
- ②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
- ③ 신청마감일 현재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연구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 되었다고 판정된 후 지원기관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④ 연구개시일 현재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수가 신청교원을 포함하여 소속 학과(부) 현원의 20%를 초과하게 되는 자. 단,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교원(휴직자, 연구년교수, 국내·외 파견교수 등)을 포함하여 계산하되, 소속학과(부) 전임교원수가 7명 이하인 경우는 1명, 8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는 2명,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임교원 현원의 20%(소수점 이하 절사) 이내로 하되 의과대학은 교실별 인원수로 함
- ⑤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 총 강의시수가 책임강의 시수에서 10학점 이상 미달한 자. 다만, 책임강의 시수 적용 대상은 수업관리지침 제47조에 따름
- ⑥ 연구년 6개월 신청자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학기 이상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
- ⑦ 연구년 1년 신청자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2학기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(단, 법령이나 제규정에 의해 강의가 면제된 자는 예외)
- ⑧ 영어강의 의무교원이 학부 영어강의를 임용학년도 학기부터 신청마감일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학기당 평균 1강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자[학년제(의과대학, 치의학전문대학원)로 운영하는 대학(원) 소속 교원은 학년도로 계산함]
- ⑨ 연구개시일 현재 타 기관의 해외파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⑩ 징계적용기준: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, 연구 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
(일반징계: 정직-정직 기간 동안 제한 / 연구윤리: 주의, 경고-1년, 견책 이상-3년)

## 마. 연구계획서 심사 및 선정

지원자의 자격요건(교육 및 연구) 심사, 연구실적 심사, 연구계획서 심사 등의 결과를 기준으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## 바.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 제출

- ① 연구결과보고서: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(연구년 유형 II)
- ② 연구성과물: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

### ③ 사사 표기

ⓐ 국문: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(과제번호: 0000-0000) 지원에  
의하여 연구되었음

ⓑ 영문: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
(Grant number: 0000-0000)

### 사. 연구비 회수

① 연구결과보고서 혹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 지원된 연구비를  
환수하거나 해당 환수금액을 기본연구활동지원 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다.

- 회수 기간 및 방법

항목	내용	
회수 기간	기 지급받은 연구년지원 비용을 전액 반납할 때까지	
회수 방법	재직 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여공제(원천징수) 원칙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월 100만원*씩 급여에서 공제</li> <li>• 본인이 원하는 경우, 급여공제(원천 징수) 처리 전에 현금 일시납으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할 수 있고, 급여공제(원천 징수) 도중 잔액에 대하여 완납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
	퇴직 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직교원은 현금일시납으로 퇴직 전까지 기 지급 비용 전액 반납</li> </ul>

\* 단, 기타 부득이한 사정[공제금액 과다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‘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(월 150만원)’ 보다 적은 경우]으로 월 100만원을 공제하지 못할 경우 공제  
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 조정에 따른 회수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

#### 4.2.2.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사업

##### 가. 지원 목적 및 절차

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과 학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『지원비 신청→확인→지원비 결정』 등을 과정을 통해 게재 논문의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.

##### 나. 지원 금액

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한다.

지급 구분	학술논문 분류	지원금(천원)	
		주저자	공저자
우수학술논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Cell, Nature, Science 게재 논문</li> <li>• Cell, Nature, Science 자매지 게재 논문 (인용지수 20 이상 학술지에 한 함)</li> </ul>	10,000	600
SCI(E), SSCI, A&HCI 저널 JCR %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JCR 1% 수준 이내 게재 논문</li> <li>• JCR 5% 수준 이내 게재 논문</li> <li>• JCR 10% 수준 이내 게재 논문</li> <li>• JCR 25% 수준 이내 게재 논문</li> <li>• JCR 100% 수준 이내 게재 논문</li> </ul>	5,000 4,500 4,000 2,000 1,300	600 600 300 300 300
한국연구재단등재 (후보)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게재 논문</li> </ul>	800	200
SCOPUS 저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SCOPUS 저널 논문</li> </ul>	1,000	200
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논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(SJR Ranking Q1에 한함)</li> </ul>	2,000	300

- ① 학술논문은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계(서론, 본론, 결론, 참고문헌 등)를 갖춘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권, 호,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(온라인 및 오프라인) 완료된 논문만 인정
- ② 논문 1편당 1회 지원이며 지원 구분에 중복된 경우 상위 구분만 지원(중복지원 안됨)
- ③ 1인당 연간 논문장려금은 20,000천원까지 지원함(단, JCR 1% 이상 수준의 논문은 예외)
- ④ JCR 기준은 권, 호, 페이지가 명시된 학술논문 인쇄본 발행(온라인 및 오프라인)일자 당시 기준으로 적용
- ⑤ JCR(%) 변경 적용은 당해 연도 Web of Science JCR 공개 시점(5~6월경)으로 하고, 확정판 공개(10월경) 이후 발행된 논문은 확정판 적용함. 당해 연도 JCR 공개 이전에 발행된 논문은 이전 연도 JCR(%) 적용

- 
- ⑥ JCR 적용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% 값이 작은 학문분야를 우선 적용
  - ⑦ JCR 학문분야별 저널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JCR 1%를 적용하지 않으며 학문분야 저널수가 50~99개인 경우 최상위 저널을 JCR 1%기준으로 지급
  - ⑧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및 SCOPUS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인문사회 및 예·체능 계열만 적용
  - ⑨ 논문의 형식이 Correspondence(서신, Letter to Editor), Editorial, Note, Comment, Image 등 Research Article (Review article 포함)로 인정되지 않는 형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# 다. 지원 대상

- ① 주저자: 우리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상기 학술지에 주저자(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)로 논문을 게재한 자
- ② 공동저자: 우리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상기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공동저자로서 주저자가 타기관 소속인 경우
- ③ 논문편수에 제한 없이 1편당 1인에 한하여 지원

#### 라. 지원 제한

- 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자
- ② 교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되어 경과조치(논문제재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)중인 자

#### 4.2.3. 신진 및 중견연구지원사업

##### 가. 지원 목적 및 절차

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교수와 일정 자격을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학술연구비로서 『연구과제 공모→연구계획서 접수→연구계획서 평가→연구과제 선정』 등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다.

##### 나. 분야별/계열별 지원 금액(신진연구, 공동연구, 일반연구, 기초 및 보호학문연구 중 1과제만 선택)

구 분		계열별 지원 연구비		
분야 별		인문/사회	예체능	자연
신진연구	1년차	10,000천원	10,000천원	10,000천원
	2년차	6,000천원	6,000천원	10,000천원
중견연구	공동연구	캠퍼스간	10,000천원	15,000천원
		학제간	15,000천원	15,000천원
	일반연구		6,000천원	10,000천원
	기초 및 보호학문 (공동)	1년차	40,000천원	40,000천원
		2년차	40,000천원	40,000천원
		3년차	40,000천원	40,000천원
	해외공동연구		10,000천원 (계열공통)	

##### 다. 신청자격

- ① 신진연구: 우리 대학 임용 후 2년 이내 재직중인 전임교원(1년 과제, 2년 과제 중 선택)
- ② 중견연구: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전임교원
  - 가) 공동연구: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여수와 광주캠퍼스 교원이 각 1인 이상 참여
  - 나) 일반단독 및 보호학문연구: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
  - 다) 기초 및 보호학문연구: 우리 대학 인문, 사회, 자연과학, 기초 의·약학, 법학, 예술 등 기초 및 보호학문 분야에 재직 중인 동 부설연구소 내 소속 참여교원 (전임교원) 3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공동연구팀을 구성
- ③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 및 학술서적(번역서 이상)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하여 160점 이상인 자. 다만, 예·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5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(필수)을 포함하여 연구실적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(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)

## 라. 신청 제한

### ① 연구책임자

- ⓐ 연구개시일 현재 교내연구비(학술도서출판지원비 제외)를 지원받고 연구 수행중인 자
- ⓑ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
- ⓓ 신청마감일 현재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연구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 되었다고 판정된 후 지원기관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ⓔ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 총 강의시수가 책임강의 시수에서 10학점 이상 미달한 자(책임강의 시수 적용 대상은 수업관리지침 제47조에 따름)
- ⓕ 연구개시일 현재 외부 연구과제(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고형 과제에 한하며 용역 및 위탁과제 제외)를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의 경우 2개 과제, 자연(기초, 응용)계열의 경우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중 이거나 혹은 용역 및 위탁과제 포함하여 연구비 총액이 8,000만원을 초과한 자(다만, 신진연구 및 해외공동연구 적용 제외)
- ⓖ 연구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자
- ⓗ 연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장기출장(휴직포함)을 계획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자
- ⓘ 신청 마감일 현재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아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ⓙ 연구개시일 현재 본 지원금을 지원받고 연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### ② 공동 연구원

- ⓐ 연구개시일 이전까지 각종연구비를 지원 받고 결과보고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
- ⓑ 신청 마감일 현재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연구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 되었다고 판정된 후 지원기관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ⓓ 신청 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 총 강의시수가 책임강의 시수에서 10학점 이상 미달한 자(책임강의 시수 적용 대상은 수업관리지침 제47조에 따름)
- ⓔ 공동연구원은 다른 교내연구지원사업의 공동연구과제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(신진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로 중복 신청 가능)
- ⓕ 연구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자
- ⓖ 연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장기출장(휴직포함)을 계획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자
- ⓗ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아 처분일로부터 신청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(일반징계: 정직-정직 기간 동안 제한/ 연구윤리: 주의, 경고-1년, 견책 이상-3년)

## 마. 연구계획서 심사 및 선정

지원자의 자격요건 심사, 연구실적 심사, 연구계획서 심사 등의 결과를 기준으로 학술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
## 바. 연구성과물 제출

- ① 연구성과물: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

### ※ 기초 및 보호학문 공동연구의 경우

구 분	논문 편수
1년 지원과제	1편 이상
2년 지원과제	2편 이상
3년 지원과제	3편 이상

### ② 사사 표기

- ⓐ 국문: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(과제번호: 0000-0000)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
- ⓑ 영문: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(Grant number: 0000-0000)

## 사. 연구비 회수

- ① 연구결과보고서 혹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 지원된 연구비를 환수하거나 해당 환수금액을 기본연구활동지원 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다.
- 회수 기간 및 방법

항목	내용	
회수 기간	기 지급받은 신진 및 중견연구지원 비용을 전액 반납할 때까지	
회수 방법	재직 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여공제(원천징수)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매월 100만원*씩 급여에서 공제</li> <li>· 본인이 원하는 경우, 급여공제(원천 징수) 처리 전에 현금 일시납으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할 수 있고, 급여공제(원천징수) 도중 잔액에 대하여 완납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
	퇴직 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직교원은 현금일시납으로 퇴직 전까지 기 지급 비용 전액 반납</li> </ul>

\* 단, 기타 부득이한 사정[공제금액 과다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‘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(월 150만원)’ 보다 적은 경우]으로 월 100만원을 공제하지 못할 경우 공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 조정에 따른 회수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

#### 4.2.4.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지원사업

##### 가. 지원 목적 및 절차

우리 대학 전임교원에게 세계적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『지원비 신청→확인→지원비 결정』 등을 통해 학술대회 규모 및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.

##### 나. 지원 금액

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5월, 10월, 익년 2월에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지 역	지원 상한액*	비 고
	논문발표자 (구두 또는 포스터) 좌장 및 기조연설자	
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	500천원	교수 1인당 1회
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	800천원	
러시아 및 중앙아시아	1,200천원	
유럽, 캐나다, 미국, 남미, 호주 및 그 외 지역	1,500천원	

\* 지원금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

##### 다. 지원 대상

- ① 우리 대학 예능분야 전임교원으로서 국제수준의 발표회(전시회)에서 발표하는 교원. 단, 동일한 작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참가하는 연주회 및 발표회(전시회)의 경우는 1인에게만 지원하며 당해 연도 예능분야 발표회(전시회)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.
- ② 국제수준의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회의, 심포지엄, 세미나 등에 논문발표(구두 발표, 포스터발표) 또는 좌장역이상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 단, 연구비에서 경비지원을 받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### 라. 지원 제한

- ① BK21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와 각종 연구비(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항공료, 체재비)등에서 경비지원을 받는 자(중복 지원의 경우에는 회수 대상이 됨)
- ② 논문 발표자의 소속이 타 대학(기관)인 경우

#### 4.2.5. 정책연구과제 지원사업

##### 가. 지원 배경

- ① 대학의 개혁과 경쟁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안 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있고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
- ②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분야의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우리 대학의 정책 방향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

##### 나. 추진 개요

- ① 연구기간: 당해 연도 7월 ~ 당해 연도 12월
- ② 참여대상: 전 교직원(‘기본연구활동지원사업’을 수행하는 자는 지원 제한)
- ③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 방식: 공모
- ④ 공모과제: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관련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연구[50과제 내외]
- ⑤ 연구비: 과제당 1,600만원 내외

※ 연구계획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액 결정

##### 다. 세부 추진 사항

###### ① 정책연구과제 심사

- 「학생지도 및 정책연구활동 심사위원회」와 「총괄심사위원회」에서 심사 담당
- 심사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: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,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,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,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## ② 연구책임자

연구책임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, 연구계획서 작성, 연구내용 및 연구수행 방법 결정, 공동연구원의 선정, 연구수행 점검 협조, 연구성과물 제출 및 연구결과의 보고,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

###### ③ 공모과제의 신청

- 공모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 계획(신청)서(별지 5호 서식)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
- (계획(신청)서 제출): 당해 연도 7월 중
- (연구팀 구성) 3인 ~ 6인 이내(단독 연구는 불허)

###### ④ 공모과제 연구자 선정

- 선정방법: 평가결과 합산 상위점수 순으로 50과제 이내에서 선정

- 심사기준

평가 항목	평가 지표	배점	
연구목표의 우수성(25%)	연구목표의 적정도 및 필요성	25	/ 25
연구계획의 우수성(50%)	연구목적과 세부연구내용의 부합성	25	/ 50
	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	25	
연구성과의 기대(25%)	대학발전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	25	/ 25
합계:		점 / 100점	

⑤ 연구계획서 수정 · 보완

-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요구 가능
- 연구계획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, 수정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생지도 및 정책연구 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으로 연구계획서 확정 가능

⑥ 최종보고서 제출

- (작성 방법)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(별지 6호 서식) 활용
  - 기준서식: A4, 13포인트, 줄간격 160 기준, 여백(좌·우 30 / 위쪽·아래쪽 20 / 머리말·꼬리말 10)
  - 기준페이지: 70페이지内外
- (최종보고서 제출기한 및 수량)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10부 제본 제출

⑦ 최종보고서 평가 및 등급 부여

- (평가기준)

평가 항목	평가 지표	배점	
목표 달성을(20%)	연구목표의 달성정도	20	/ 20
연구성과의 우수성(40%)	연구성과의 실현가능성	20	/ 40
	연구성과의 연구목표와의 부합성	20	
연구성과의 활용(40%)	연구성과를 통한 대학발전의 기대정도	20	/ 20
	연구성과의 적용범위	20	
합계:		점 / 100점	

- (등급기준)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3등급 (S, A, B)으로 구분

지급등급 (결과보고서 비율)	S등급 (상위 30%)	A등급 (30%초과 70% 이내)	B등급 (70%초과 100% 이내)
지급률 (연구비 기준)	105%	100%	95%

- (결과 매우 미흡\*) 정책연구과제의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책임자의 정책연구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 가능
- \* 심사위원들의 평균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

## ⑧ 연구결과 활용

- (연구결과 활용) 관련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(지식재산권) 정책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(또는 연구성과물)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대학에 귀속함

## ⑨ 정책연구비 지급

- (지급시기 및 지급액)
  - 지급시기: 선금(7월), 잔금(의년도 2월)
  - 연구비: 과제당 1,600만원 내외
- (연구책임자 · 공동연구원 지급 기준금액)
  - 연구원 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정함. 단, 직종별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.

※ 공동연구원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음

- (연구비 환수)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는 환수처리
- 라. 유의 사항

### ① (불인정 사항)

- 최근 연구 완료된 정책연구과제
- 본연의 업무 결과로 발생한 성과물
- 단순 업무 매뉴얼 성격의 결과물

### ② (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) 연구부정행위(표절, 변조 등)에 의한 연구결과를 제출한 경우 최대 3년까지 대학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참여를 제한함

### ③ 공동연구자는 정책연구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학생지도 참여 가능

### ④ 연구책임자 · 공동연구원의 변경

- 신분변동 등으로 인해 연구자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나 새롭게 우리 대학에 재직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자 변경 신청과 「학생지도 및 정책연구활동 심사위원회」 승인으로 변경 가능

### ⑤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에게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 기준

- 실적 인정기간 중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하여 실적 인정

- ※ 서식 1. 기본연구활동계획서
2. 기본연구활동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
  3. 기본연구활동 최종보고서
  4. 기본연구활동 변경계획서
  5. 정책연구과제 계획(신청)서
  6.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서
11. 기본연구활동지원비 반납 동의서

<서식 1>

## <0000년도 기본연구활동계획서>

연구자	성명 : _____ 직급 : _____			
소 속	대학 _____ 학부(전공) _____			
연락처	전화	교내 : _____ 휴대폰 : _____	E-mail	@jnu.ac.kr
기본연구 활동기간*	20 . 3 ~ (최대 2년)			

### <작성 안내>

- 기본연구활동기간 : 최대 2년(재직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으로 설정)
- 연구기간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을 1페이지 분량으로 연차별 간략하게 작성

### 1. 수행하고자 하는 기본연구활동 항목

- (예시) 논문, 특허, 도서 등

### 2. 연차별 기본연구활동 및 내용

- (1년차 계획):
- (2년차 계획):

### 3. 기대되는 성과

<서식 2>

<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>

연구자	성명 : _____ 직급 : _____		
소 속	대학 _____ 학부(전공) _____		
연락처	전화	교내 : _____ 휴대폰 : _____	E-mail : _____@jnu.ac.kr
활동기간*	20 . 3 ~ _____ (1년 단위)		

<작성 안내>

- 활동기간 : 최대 2년(재직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으로 설정)
- 1년 동안 수행한 연구내용과 2년차에 수행할 연구계획을 1페이지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

1. 1년차 수행 내용:

2. 2년차 수행 계획:

<서식 3>

### < 기본연구활동 최종보고서 >

연구자	성명 :		직급 :	
소 속	대학		학부(전공)	
연락처	전화	교내 : 휴대폰 :	E-mail	@jnu.ac.kr
총 활동기간*	20 . 3 ~ (최대 2년)			

#### <작성 안내>

- 총 활동기간 : 최대 2년(재직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으로 설정)
- 총 연구기간(최대 2년)동안 수행한 연구활동 내용 및 연구결과를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
- 성과물은 한글이 원칙이되, 영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

#### 1. 기본연구활동 수행 항목(2년간)

- 항목:

#### 2. 달성 성과(2년간)

- 제목:
- 내용:

#### 3. 달성된 성과 증빙 자료

- C-RAMS 프로그램에 등록

<서식 4>

### <기본연구활동 변경계획서>( 년차)

연구자	성명 : _____			직급 :
소 속	대학 _____			학부(전공) _____
연락처	전화	교내 : 휴대폰 :	E-mail	@jnu.ac.kr
활동기간*	20 . 3 ~			(1년 단위)

#### <작성 안내>

- 활동기간 : 최대 2년(재직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으로 설정)
-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전·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1페이지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

## 1. 변경할 항목

- 당초:
- 변경:

## 2. 변경 내용 및 사유

- 변경 내용:
- 변경 사유:

<서식 5>

**<정책연구과제 계획(신청)서>**

관리번호	연구자 선정방식			공모	
연구과제명					
연구기간	20 . . . ~ 20 . . . ( 개월)				
연구책임자	소속	직급	성명	연구비수령액	
	근무부서	주요업무			
연구비	일금일천육백만원정(₩16,000,000)				
공동연구원 (2인 ~ 5인)	소속	직급	성명	연구비신청액 (원)	비고
연구비	₩ 16,000,000				
<p>본인은 상기 정책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학에서 정한 정책연구 관련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>붙임: 연구계획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span>연구책임자</span> <span>(서명 또는 인)</span> </p> <p>전남대학교총장 귀하</p>					

## I. 연구요약

- ※ 연구의 배경, 목적,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500자 정도로 요약하되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
- 연구요약 및 보고서는 연구과제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가능하나, 추진 일정은 명기해야 함

## II. 연구계획

### 1. 연구 목적 및 필요성

- ※ 연구과제의 수행동기,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

### 2. 연구내용 및 범위

- ※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

### 3. 추진전략 및 방법

- ※ 관련정보 수집, 세미나 개최, 전문가 확보,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(접근방법)등을 구체적으로 기술

### 4.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(이론적 배경)

- ※ 선행 연구 내용 및 이론적 배경 등 기재

### 5.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

- ※ 본 과제의 기여도,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
- ※ 구체적인 활용분야,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

## 6. 연구추진 일정

세부연구내용	월별	연구추진일정							비고
		5	6	…	…	10	11	12	
				…	…				
				…	…				
사업진도(%)				…	…				

## 7. 연구 분담표

분 담 내 용	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		
	소 속	직 급	성 명

<서식 6>

## 20 학년도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서

관리번호	연구자 선정방식			공모
연구과제명				
연구책임자	소속	직급	성명	연구비수령액
연구기간	20 . . . ~ 20 . . .			
연구비 총액	₩ 16,000,000			
공동연구 (2인~5인)	소속	직급	성명	연구비신청액(원)
요약서	1. 연구목표			
	2. 목표 대비 성과			
	3. 기대효과			
	4. 산출물 활용 부서 및 제도 개선·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			
	달성 성과	정책연구 최종보고서 1건		
위와같이 20 년도 정책연구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				
첨부: 최종보고서 10부				
20 년 월 일				
연구책임자			(서명 또는 인)	
전남대학교총장 귀하				

<최종보고서 편집양식>

정책연구-20 -○

## 연구과제명(20 ~ 25포인트)

연구책임자	
소 속 :	
직 급 :	
성 명 :	

---

<목록 예시>

## I. 개요

1. 연구주제 선정 배경
2. 연구 목표
3. 연구 방법

## II. 이론적 배경

## III. 연구 및 분석 내용

- 현황 분석
- 사례 연구
- 국내·외 동향
- 설문조사 및 분석
- 비교 연구 등

## IV. 연구 성과(또는 정책 제안)

## V. 결론

<참고 문헌/자료>

<부록> (부록은 기준페이지에서 제외)

<서식 11>

### <기본연구활동지원비 반납 동의서>

연구자	소 속	대학		학과(부)
	사 번		성 명	(인)
연구기간	20 . . . ~ 20 . . . (최대 2년)			
반납 방법	급여공제: 월 100만원씩 연구비전액 반납 시까지			
<p>상기 본인은 2022학년도 전남대학교 교직원 『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』에  <u>의거 최종 연구성과물을 연구기간 안에 미제출할 경우 기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</u>  <u>반납하겠습니다.</u></p>				
20 년 월 일				
전남대학교총장 귀하				

## [별첨2]

### 나. 학생지도비

#### 1. 기본 방향

- 학생지도 실적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평가배점 실적에 따라 비용 지급
- 학생의 학사, 진로, 취업, 창업 등에 대한 지원활성화를 위해 역량있는 교직원의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지향

#### 2. 평가 기준

평가지표	
- 학생 상담	- 학생 입장지도
- 학생 멘토링	- 현장(교육)실습 지도
- 학생 안전교육 · 지도	- 팀 코칭제
	- 학생 공모전/취업(창업) 지도

※ 평가지표: 교직원이 활동 가능한 분야에 개별적, 선택적 적용되는 지표

#### 3. 평가 및 지급방법

구분	1차 지급(7월)	2차 지급(의년도 2월)
기준금액		직원: 7,000,000원 조교: 5,500,000원
지급비율	40%내외	60%내외
평가근거	-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	- 학생지도 결과보고서 제출
평가 및 지급방법	- 제출자 지급 - 미제출자 미지급	- 미제출자 미지급 및 1차 지급분 회수 - 학생지도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- 활동 최소단위[30점 이상 / 년] 미충족 시 미지급
확인근거	- 학생지도 계획서 - 심사 결과표	- 학생지도 결과보고서 - 결과보고서 심사 결과표

※ 기준금액은 추후 확정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

#### 4. 학생지도실행 결과보고서 평가 및 지급 기준

- 평가기준: 최소단위(30점이상/년)

학생지도 실적의 평가지표 점수합계

- 평가단위: 대학(원), 부속기관, 본부(광주/여수)

- 평가방법: 학생지도 활동 전당 인정여부평가 후 점수 합계

- 지급기준: 최소단위(30점이상/년) 미 충족 시 미지급

1점당 20,000원씩 점수 합계에 따라 비용 지급

[서식10: 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 참조]

※ 서식 7. 학생지도 계획서

8. 학생지도 계획서 심사 지표

9. 학생지도 결과 보고서

10. 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

<서식 7>

## 20 학년도 학생지도 계획서

소 속			정책연구	참여( )/비참여( )			
직 종			학생지도 및 상담교육 이수 (미이수자) 이수예정일: oo. oo.	이수( )/미이수( )			
직 급							
개인번호			진로·취업 관련 자격증	※ 자격증명 기재			
성 명							
지표명	실적	배점	소계	단가	합계	비고	
학생 상담	건	3점	점	20,000원	원		
학생 멘토링	건	5점	점		원		
학생 안전교육·지도	시간	5점	점		원		
학생 입장지도	시간	5점	점		원		
현장(교육)실습 지도	시간	5점	점		원		
팀 코칭제	팀	100점	점		원		
학생 공모전/취업(창업) 지도	팀	100점	점		원		
점수 및 비용 합계			점	원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사무분장 업무 : 1. /2. /3. /4. /5. /6.</td> </tr> </table>							사무분장 업무 : 1. /2. /3. /4. /5. /6.
사무분장 업무 : 1. /2. /3. /4. /5. /6.							
<p>·지표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/통상적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작성      ·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계획 작성</p>							
지표별 실행계획							
<p>위와 같이 20 학년도 학생지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     20 년 월 일</p>							
제출자				(서명 또는 인)			
전남대학교총장 귀하							

<서식 8>

## 학생지도 계획서 심사 지표

### 1. 학생지도 계획서 평가

- 학생지도계획서의 실현가능성과 충실성을 중심으로 작성된 지표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
- 제출한 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Pass 또는 Fail로 평가하고 심사기준 항목 중 Pass가 3개 이상이면 적합으로 평가

### 2. 심사기준

#### 가. 계획서 제출 기한의 준수

-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, 지연 제출 시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결정

#### 나. 계획의 실현가능성

- 프로그램 운영 계획 또는 학생지도 계획 등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

#### 다. 계획의 충실성

- 프로그램 운영 계획 또는 학생지도 계획 등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

#### 라. 계획의 발전성

- 프로그램 운영 계획 또는 학생지도 계획 등에 대한 발전성을 고려하여 평가

#### 마. 계획의 달성가능성

- 프로그램 운영 계획 또는 학생지도 계획 등에 대한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

<서식 9>

## 20 학년도 학생지도 결과보고서

소 속	정책연구		참여( )/비참여( )			
직 종	학생지도 및 상담교육 이수		이수( )/미이수( )			
직 급			(미이수자) 이수예정일: oo. oo.			
개인번호	진로·취업 관련 자격증		※ 자격증명 기재			
성 명						
신분변동	해당( )/미해당( )	신분변동자 실제근무기간	20 . . . ~ 20 . . . ( 개월)			
	사유( )					
지표명	실적	배점	소계	단가	합계	비고
학생 상담	건	3점	점	20,000원	원	
학생 멘토링	건	5점	점		원	
학생 안전교육·지도	시간	5점	점		원	
학생 입장지도	시간	5점	점		원	
현장(교육)실습 지도	시간	5점	점		원	
팀 코칭제	팀	100점	점		원	
학생 공모전/취업(창업) 지도	팀	100점	점		원	
점수 및 비용 합계			점		원	
신분변동자(근무기간 반영) 점수 및 비용 합계			점	원		
지표별 실행결과	사무분장 업무 : 1. /2. /3. /4. /5. /6. ·지표별 실행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/통상적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작성					
위 제출 실적은 사실임을 확인하고 20 학년도 학생지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 제출자 (서명 또는 인) 전남대학교총장 귀하						

<서식 10>

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

지표명	증빙방법	평가배점
학생 상담	학생의 학사/진로/취업/창업 내용에 대한 개인 상담 실적 [전산시스템 입력, 결과보고서]	건당 3점 (학생 1인당 연간 5회 이내)
학생 멘토링	신입생·재학생·외국인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[운영계획서, 전산시스템 입력, 결과보고서]	건당 5점 (1회당 2명 이내)
학생 안전교육·지도	학생 안전 교육·지도 활동 실적 - 교육시설물 안전교육·사고 방지 활동 실적 - 대형행사 안전교육·지도 활동 실적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소방교육, 응급처치 교육 등 [실시기관 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보고서]	1시간당 5점 (1일 최대 20점/ 연간 150점 상한)
학생 입장지도	학생의 행사에 참여하여 입장 지도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[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]	1시간당 5점 (1일 최대 20점)
현장(교육)실습 지도	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[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]	
팀 코칭제	개인 또는 집단(부서/단체) 단위로 팀(그룹) 또는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 학사지도,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 실적 [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보고서]	1팀당 최대 100점 (연간 기준 최소 5회 이상 참여 시 50점/추가 참여 시 회당 10점씩 부분점수 인정)
학생 공모전/취업 (창업) 지도	학생들의 공모전 또는 취업대상자(미취업 졸업자 포함)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[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보고서]	
최소기준	학생지도 영역에서 최소 30점 이상 취득 시부터 지급 (학생지도 실적 1점당 20,000원) ※ 최종 실적이 30점이 안되는 경우, 지급받은 선금금 환수 조치(30점 이상이나 선금금보다 최종 실적이 적은 경우, 차액 환수 조치)	
증빙자료 필수사항	* 상담·멘토링 입력 및 결과보고서: 전산시스템 입력(100자 이상), 활동 사진, 학생 서명 * 안전교육·안전지도·임장지도·현장(교육)실습지도 결과보고서: 활동시간, 활동내용, 활동사진 첨부 * 팀코칭제, 학생 공모전/취업 지도 회차별 활동보고서: 활동 시간, 활동 내용, 활동 사진, 학생 서명	
지표별 세부기준	각 지표별 인정기준, 운영방법, 활용서식 등을 「2023학년도 교직원 학생지도 활동 업무 처리기준」에 의함	

※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인정 및 비용 지급

※ 학생 상담, 학생 멘토링, 팀코칭제, 학생 공모전/취업(창업지도)를 비대면으로 진행시 활동사진은  
화상회의 프로그램(팀즈, MEET, ZOOM 등)을 활용하여 진행한 활동의 캡처화면 등을 첨부